

# UCP 해설

유 하상

# 제 5 주

제19조-26조

유 하상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19조

###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a.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을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스탬프 또는 표기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스탬프 또는 표기에 의하여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19조

###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 iii. 비록 다음과 같더라도,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 a. 운송서류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또는 최종목적지를 명기하고 있더라도
  - 또는
  - b. 운송서류가 선박, 적재항 또는 양륙항에 관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 iv. 단일의 운송서류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서류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 v.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운송서류).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 vi.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c. i. 운송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19조

### ■ 제19조 해설

#### 운송서류의 종류(제19조-25조)

- \* 복합운송서류, 해상선하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선하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특사 배달 영수증
- 각 운송방식별로 운송서류 수리요건, 발행자의 명칭과 자격표시, 서명방법, 선적일, 환적허용여부, 제시할 원본 통수 등 수리요건을 명시함

#### 복합운송서류(제19조)

\* 개념 :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발행된 서류

- ① 운송인, 복합운송인, 선장, 각 대리인 명칭, 자격, 서명
- ② 상품이 수탁, 발송 또는 본선적재
- ③ 선적항과 수탁지가 다르고, 양륙항과 최종도착지가 다른 경우 및 선박, 선적항, 양륙항에 "예정된"이라는 표시서류
- ④ 발급된 원본전통
- ⑤ 약식, 배면 백지식 복합운송서류
- ⑥ 용선계약 표시는 수리 불가
- ⑦ L/C에서 환적을 금지 해도 전체 운송이 동일한 복합운송 서류에 커버 되면 환적 되거나, 환적 될 수 있다는 표시 서류 수리 가능

####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는 본선적재부기와 적재 선박명이 기재되었다면 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

### ■ 제20조 선하증권

#### 제 20조 선하증권

a. 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 물품이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이 선박의 명칭에 관하여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및 실제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는 요구된다.

### ■ 제20조 선하증권

- iii.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선화증권이 적재항으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재항에 관하여“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적재항, 선적일 및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 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규정은 비록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선화증권상에 사전에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더라도 적용된다.
- iv. 단일의 선화증권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상에 표시된대로 전통인 것.
- v.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선화증권).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 vi.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c. i. 선화증권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이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화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선화증권상의 조항은 무시된다.

## ■ 제20조 해설

### 용선계약선하증권상의 도착항 변경

신용장상에서 도착항을 특정 지리적 지역, 몇 개의 항구로 정한 경우에, 도착항을 특정 항구로 기재하지 않고, 특정 지리적 지역이나 몇 개의 항구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다.

### 해상운송서류(제20조)

- 운송인 명義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각각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하여야 함. (운송서류 발행인의 Name, Capacity, Signature 표시되어야 함)

본선적재 또는 선적 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함

### ■ 제20조 해설

#### \* 본선적재 부기

-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명시하고 선하증권상 선적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예정된" 선적항을 명시한 경우 본선적재 부기에서 L/C상의 선적항을 명시할 것 .
- 발행된 원본 전통 제시할 것
- 약식 또는 배면 백지식 선하증권 수리 가능
-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이라는 표시가 없어야 함
- 전체해상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 되는 경우 환적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 가능
- L/C 에서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 트레일러 및 LASH에 선적된 것이면 환적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 가능
- 선하증권 상에 운송인이 환적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는 문구는 은행에서 무시함
- 환적의 정의 :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양륙항 사이에 해상운송도중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다른 선박으로 적재하는 것
- 환적 금지 문언이 없는 경우 : 환적 불가로 간주함

#### \*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상법 제 814 조)

상품명세, 화물의 기호, 선박명, 국적, 톤수, 선장명, 하송인명, 하수인명, 선적항, 양륙항, 운임, 작성지, 작성 일자, 발행 통수

## ■ 제21조 비양도성 해상운송장

###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 물품이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 선박의 명칭에 관하여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및 실제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는 요구된다.

## 제21조 비양도성 해상운송장

제21조

### ■ 제21조 비양도성 해상운송장

- iii.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 적재항으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적재항에 관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적재항, 선적일 및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 표기가 요구된다. 이 규정은 비록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사전에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더라도 적용된다.
  - iv. 단일의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 v.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 vi.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제21조 비양도성 해상운송장

제21조

### ■ 제21조 비양도성 해상운송장

- c. i.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이 동일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은 수리될 수 있다.
-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상의 조항은 무시된다.

### ■ 제21조 해설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제21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단순한 운송화물 수취증임

수리가능요건 : Ocean B/L과 거의 동일함 (운송인, 선장과 각 대리인의 명칭과 자격표시, 본 선적재표시, 선적항, 양륙항 표시, 원본 전통, 약식 또는 배면 백지식 발행, 용선 수리 불가, 환적 조건 등)

\*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 (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1990 제정) : 국제해상 위원회의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

##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제22조

### ■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 제 22조 용선계약선하증권

a.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선하증권(용선계약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주 또는 선주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용선자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 중 누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선주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ii.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 물품이 본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

용선계약선하증권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제22조

### ■ 제22조 용선계약 선하증권

- iii.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양륙항은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항구의 구역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될 수 있다.
- iv. 단일의 용선계약선화증권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용선계약 선화증권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 b. 용선계약서가 신용장의 조건(terms)에 따라 제시되도록 요구되더라도, 은행은 그 용선계약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 ■ 제22조 해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제22조)

신용장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로

- ① B/L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
- ② 선장, 선주 또는 그 대리인 명칭, 자격, 서명 (확인)
- ③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거나, 표시하지 않은 서류
- ④ 상품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
- ⑤ 발급된 원본전통

## 제23조 항공운송서류

### 제23조

#### ■ 제23조 항공운송서류

#####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a. 항공운송서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운송인, 또는
-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ii.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iii. 발행일을 표시하고 있는 것. 이 일자 는 선적일로 본다. 다만, 항공운송서류가 실제의 선적일에 관한 특정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표기에 명기된 일자 는 선적일로 본다.

운항번호 및 일자에 관하여 항공운송서류상에 보이는 기타 모든 정보는 선적일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iv.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표시하고 있는 것.

v. 신용장이 원본의 전통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인 것.

vi.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 ■ 제23조 항공운송서류

-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목적공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항공기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항공기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i. 항공운송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은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항공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 ■ 제23조 해설

항공운송서류(제23조)

신용장에서 요구 시

- ① 운송인, 대리인 명칭, 자격, 서명
- ② 상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탁되었음이 표시
- ③ 실제 발송일자 (요구하는 경우), 발행일=선적일자
- ④ L/C상의 출발공항, 도착공항이 표시
- ⑤ 원본전통 요구 시에도 "For Shipper/Consignor"용 원본
- ⑥ 운송조건 전부 (or 일부)를 다른 서류를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
- ⑦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하여 전체 운송 구간이 커버 되는 경우 항공 운송서류 상 물품이 환적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 할 수 있음
- ⑧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여도 항공 운송서류에 환적이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된 것도 수리 가능함

##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운송서류

제24조

### ■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운송 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a.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또는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서명, 스탬프 또는 표기에 의하여 물품의 수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

물품의 수량에 관한 운송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또는 표기는 운송인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물품의 수량에 관한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 스탬프 또는 표기는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행동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철도운송서류가 운송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회사의 모든 서명 또는 스탬프는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서류의 증거로서 수리되어야 한다.

ii. 선적일 또는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선적, 발송 또는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것. 운송서류가 일자기재의 수령스탬프, 수령일의 표시 또는 선적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iii.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지 및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운송서류

## 제24조

## ■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 서류

- b. i. 도로운송서류는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인 것으로 보여야 하거나 또는 그 서류가 누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표시하는 어떠한 표시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 ii. “부본(duplicate)”이 표시된 철도운송서류는 원본으로서 수리된다.
- iii.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본으로서 수리된다.
- c. 발행된 원본의 통수에 관하여 운송서류상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통수는 전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d.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선적, 발송 또는 운송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동일한 운송방식내에서, 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e. i.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운송서류

제24조

### ■ 제24조 해설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제24조)

신용장에서 요구 시

- ① 운송인, 대리인 명칭, 자격, 서명 (수취 스탬프 or 수취 표시)
- ② 상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탁 되었음을 표시
- ③ 발행일자(인수일자)=선적일자
- ④ L/C상의 적송지, 도착지 표시
- ⑤ 원본 부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제시 서류를 전통으로 간주하고, 원본 표시 불문하고 원본 간주함
- ⑥ L/C에서 환적을 금지해도 전체 운송이 동일한 운송서류로 커버 되고 동일한 운송 방식인 경우 환적되거나, 환적 될 수 있다고 표시한 서류 수리 가능

## 제25조 택배수령증,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서

제25조

### ■ 제25조 택배수령증,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서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 a. 운송물품의 수령을 입증하는 특송화물수령증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 i. 특송업자의 명칭을 표시하고,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정된 특송업자에 의하여 스탬프 또는 서명된 것; 그리고
  - ii. 접수일 또는 수령일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표시하고 있는 것. 이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 b. 특송요금이 지급 또는 선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특송요금이 수화인 이외의 당사자의 부담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특송업자에 의하여 발행된 운송서류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 c. 운송물품의 수령을 입증하는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스탬프 또는 서명되고 일자가 기재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이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 제25조 택배수령증, 우편수취증 또는 우편증서

제25조

### ■ 제25조 해설

특사/우편수령증(제25조)

우편 수령증 또는 우편발송 증명서 요구시

① L/C상 물품이 발송되도록 정한 지점의 스탬프 날인 또는 달리 확인되고 일자 (= 선적일자) 표시가 있는 서류

특사 배달 또는 속달 서비스 업체 발행 서류 요구시

① 특사 배달 / 속달 서비스 업체 명칭 표시되고 스탬프 날인 서명, 혹은 확인

② 접수일(date of receipt), 수취일자(date of pick-up = 선적일자) 또는 동 취지의 문언표시

## 제26조 갑판적, 부지약관 및 운임추가수수료

제26조

### ■ 제26조 갑판적, 부지약관 및 운임추가수수료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 a. 운송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거나 또는 될 것이라고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 운송서류상의 조항은 수리될 수 있다.
- b.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shipper's load and count)" 및 “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 (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조항을 기재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 c. 운송서류는 스탬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임에 추가된 비용에 대한 참조를 기재할 수 있다.

## 제26조 갑판적, 부지약관 및 운임추가수수료

제26조

### ■ 제26조 해설

#### 갑판적(제26조)

\* 갑판 선적의 원칙적 금지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 수리불가

\* 갑판선적 유보 문항 포함 운송 서류 수리가능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 부지약관 선하증권의 수리가능 :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 등

#### 운임선지급표현

운임선지급과 관련하여 오직 prepaid와 prepaid만을 명시적인 선지급을 허용하고 기타의 표현은 선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던 규정에서, freight prepayable와 freight to be paid는 선지급을 명시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운임의 선지급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허용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